

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12. 17.(수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4. 11. .

나. 제안자 : 손철운 의원

다. 회부일자 : 2014. 11. .

라. 상정일자 : 2014. 12. 17.(제220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)

- 제안설명 : 손철운 의원
- 검토보고 :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임헌기
- 질의 및 토론
-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그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5.18민주유공자 중 부상자가 5.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때 주차요금의 50% 감면규정을 신설함(안 제4조의2제1호라목)
-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자가 보훈보상대상자증서를 소지한 때 주차요금의 50% 감면규정을 신설함(안 제4조의2제1호마목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5.18민주유공자 중 부상자와 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없음.

5. 토론요지

- 가. 찬 성 : 김금용, 김경선, 신은호, 최석정, 손철운, 이도형 의원
- 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재석위원 : 6명, 찬성 : 6명, 반대 : 0명)

7. 기타

- 특이사항 없음

붙임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의2제1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
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제6항에 따른 국가보
훈처장이 발행한 5.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

마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에 따른 상이 1급
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
법률 시행령」 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
증서를 소지한 자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의2(주차요금의 감면) 인천광역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또는 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, 징수하여야 할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.</p> <p>1.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: 50퍼센트 감면(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)</p> <p>가. ~ 다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4조의2(주차요금의 감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제6항에 따른 국가</p>

<신 설>

2. ~ 9. (생 략)

보훈처장이 발행한 5.18민주
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
마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
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에
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
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「보
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
법률 시행령」 제86조에 따른
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
보상 대상자증서를 소지한
자

2. ~ 9. (현행과 같음)